

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의안
번호

2699

김현기 의원 (국민의힘, 강남구3)

- ☐ 존경하는 이병윤 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!
국민의힘 강남구 제3선거구 김현기 의원입니다.
- ☐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- ☐ 서울시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를 설립하여 도시철도 건설·운영 및 관련 개발사업 등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며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
- ☐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거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설립,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하며, 현재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 및 「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,
- ☐ 다만, 현행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, 부채관리 및 경영효율화에 관한 사항과 지도·감독, 사업계획 승인, 재정

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과 교통실 도시철도과 사무로 각각 분장되어 있어 업무추진 과정에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소통이 우려되는 바입니다.

- 이에 따라, 본 의원은 「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공사 ‘사장이 예산편성,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’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.
- 서울교통공사는 도시철도 건설·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, 도시철도부대사업, 관련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, 이동편의시설 설치·관리 등 서울시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철도사업을 담당하는 주요 산하기관입니다.
- 그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, 교통실 도시철도과 및 서울교통공사 세 주체가 상호 면밀히 사무를 검토하고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-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